

[별지 제34호] <전면개정 2004.3.31, 개정 2010.3.24, 2011.1.19, 2011.12.21, 2013.10.30. 2014.12.26., 2015.12.29., 2019.12.20., 2021.2.25., 2022.9.30., 2022.12.23., 2023.6.26., 2024.12.20., 2026.2.27.>

보험상품 신고서

1. 일반현황

일반사항			
회사명		상품명	
		보험종류	
		※ 생보 : 종신/연금/질병/상해/기타 손보 : 표준사업방법서 <부표2> 보험의 종류 중 선택(대분류/중분류/소분류 각각 기재)	
신고일		판매(예정)일	
		판매채널	범용/CM/TM/대면/방카/기타
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Mail :	개발유형	☐ 신상품 개발 ☐ 기존상품 변경 ☐ 기타 (기재)

주요보장	
①	☐ 기존 ☐ 신규
②	☐ 기존 ☐ 신규
③	☐ 기존 ☐ 신규
※ 보험금 명칭 및 보장내용 각각 요약 기재	

기초율									
위험률	☐ 참조위험률 사용 ☐ 경험위험률 사용 ☐ 기타 위험률 ☐ 참조위험률 수정사용 ☐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신규 기초율	<table><tr><td>신규 기초율명</td><td>요율검증 유무</td><td>산출통계</td></tr><tr><td></td><td></td><td></td></tr></table>			신규 기초율명	요율검증 유무	산출통계			
	신규 기초율명	요율검증 유무	산출통계						
주) 산출통계 : 자사통계, 전사통계, 자사/전사혼합, 국내외통계(통계명 작성)									
위험률 산출 위탁 여부	☐ 직접 산출 ☐ 외부 위탁 (위험률 산출 외부위탁시) ○ 위험률 산출기관 : ○ 위험률 내부검증 유무(선임계리사 확인서 첨부) : ○ 보험요율 검증기관 :								
계약자배당유무	☐ 배당 ☐ 무배당								

2. 개발(변경)배경 및 목적

- 개발(변경)배경
- 모집대상집단
- 기대효과 등

3. 신고사유

구분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조항			
신고 사유			

4. 사업방법서의 주요내용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가입대상)	판매채널	보장금액한도	비고
기본(주)계약						
특약						

- 주) 1. 가입대상 : 제3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은 보험의 목적을 기재
2. 판매채널 : 범용, 금융기관대리점, 온라인판매(CM), 통신판매(TM), 대면판매 등
3. 보장금액한도 : 산출근거 기재
4. 비고 : 사업방법서 내용중 특이사항 기재
※ 보험료 할인·할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 및 할인·할증을 기재(일반손해 보험은 "6.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주요내용"에 별도 기재)

5. 약관의 주요내용

(기준: 기본(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종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계약소멸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3. 면책기간 등 보장내용 제한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4. 고정(의무)부가 특약을 포함하여 기재

6.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주요내용

가. 보험료 산출 및 산출기초

- 보험료 산출개요

○ 보험료 산출에 적용된 기초율 (산출근거 포함)

※ 현금흐름방식 방식 적용상품은 아래의 기초율 및 그 산출근거

- 1) 최적위험률
- 2) 최적해지율
- 3) 투자수익률
- 4) 최적사업비율
- 5) 할인률
- 6) 기타비용 (법인세율 등)
- 7) 지급여력금액
- 8)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
- 9) 평균가입금액 또는 평균보험료

※ 3이원방식 적용상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

-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 1) 예정위험율
 - 위험율명, 인가근거 기재 (신규위험율 및 자사위험율에 대해서만 작성)
- 2) 예정이율
 - 연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도 기재
- 3) 예정사업비율

- 일반손해보험

- 1) 예정위험율
 - 위험율명, 인가근거 기재 (신규위험율 및 자사위험율에 대해서만 작성)
- 2) 예정사업비율
- 3) 예정이익률

○ 적립순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비산출형의 경우에만 해당)

구 분	내 용
적립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기타	

나.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산출기초(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1) 계약자적립액 산출기초

구 분	적용 기초율
위험률	
이자율	

2) 해약환급금 산출기초

구 분	적용 기초율
위험률	
이율	
해약공제액	

다.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예시(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1) 보험료 예시

(기준: 기본(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전기납, 월납)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가. 보험기간						

- 주) 1. 기본(주)계약/종속특약을 구분하되, 고정(의무)부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주)계약에 포함하여 작성
 2. 보험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최대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작성
 3.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기준으로 작성
 4. 보장/적립 구분형보험은 생략 가능

2)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기본(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전기납, 월납, 기준연령, 10년만기)

구 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남자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여자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 주) 1. 기본(주)계약/종속특약을 구분하되, 고정(의무)부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주)계약에 포함하여 작성
 2. 보험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기준으로 작성
 4. 10년만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5. 보장/적립 구분형보험은 영업보험료 1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

라. 수익성 분석에 관한 사항(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1) 상품전체

구 분	주지표	보조지표
	PM (%) (예)	CSM (%)
가이드라인	xx. x% 이상	xx. x% 이상 (예)
수익성 결과	xx. x%	xx. x%

※ 가이드라인 미충족시 그 사유

2) 대표계약 수익성 예시

구분		남자		여자	
		PM (%)	CSM (%)	PM (%)	CSM (%)
일시납	20세	xx%	xx%	xx%	xx%
	30세	xx%	xx%	xx%	xx%
	40세	xx%	xx%	xx%	xx%
	50세	xx%	xx%	xx%	xx%
5년납	20세	xx%	xx%	xx%	xx%
	30세	xx%	xx%	xx%	xx%
	40세	xx%	xx%	xx%	xx%
	50세	xx%	xx%	xx%	xx%

7. 기초서류 변경내역

○ 변경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 주) 1. 신상품의 경우 "8. 유사 상품과의 비교"로 대체
 2.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변경할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변경대비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 보험료산출이율 등 보험요율 변경시 변경사유에 회사의 자산운용전략 및 향후 금리전망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기재 (변경사유 내용을 별첨으로 기재 가능)

○ 과거 변경이력

구분	변경일	변경내용 요약	신고/자율

주) 변경일 : 신고상품은 신고일, 자율상품은 판매일 기재

8. 유사 상품과의 비교

※ 기본(주)계약(고정(의무)부가 특약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며, 자사의 유사상품과 비교

☐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 보장/적립 구분형의 경우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보험종류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부가금액주 ²⁾	예)계약체결	()	()
	예)계약관리	()	()
		()	()
기준		※해약환급금 예시와 동일한 기준	
적립순보험료		()	()
영업보험료		100,000원	100,000원
부리이율	보장		
	적립		
중도해지 이율			
환급율 예시	1년		
	3년		
	5년		
	7년		
	10년		
보장내용			

주) 1. ()는 영업보험료 대비 비율임

2.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또는 보험계약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등 기재

○ 기타 보험의 경우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보험종류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계약공제액		()	()
기준		※해약환급금 예시와 동일한 기준	
영업보험료			
환급율 예시	1년		
	3년		
	5년		
	7년		
	10년		
보장내용			

주) ()는 영업보험료 대비 비율임

□ 일반손해보험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보험종류			
보험기간			
납입주기			
주판매대상			
판매채널			
보험료 구성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이익률		
보장내용			
특이사항			

주) 특이사항은 개발(변경)상품과 유사상품의 기초서류 내용 중 상이한 사항을 기재

9. 관련 규정과의 부합여부

가. 약관 표현 및 체제

- 표준약관 준용 여부
- 약관 표현의 명확성 및 분쟁유발 가능성, 약관규정 체제의 명료성, 기존 유사상품의 약관과의 비교, 계약자 등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의 유무

※ 필요시 보험의 또는 범무실 확인을 받을 것

나.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과의 부합 여부

- 보험업감독규정 중 관련항목을 모두 명시하고 그 부합 여부 및 근거를 기재(별첨 자료로 작성하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보험상품 심사 기준의 세부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험업감독규정 제7-72조의1제1항의 심의 결과 및 제7-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 협의기구 검토결과(의결문)을 첨부)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의2의 회의자료 및 결과(의결문, 의사록)
- 다만, 금융감독원에 상품 신고 이후 경미한 사항(자구수정, 보장한도 변경 등) 변경 시 상품위원회 사후보고

다. 보험요율의 적정성

- 요율산출 내역서(자동차보험)
 - (1) 보증/담보/차종별 요율조정효과
 - (2) 최종보험료 표
 - (3) 추정손해율 또는 추정순보험료 표
 - (4) 수정손해율 또는 수정순보험료 표
 - (5) 보험료 조정통계(LDF 등 감안)
 - (6) 기초통계
- 선임계리사의 종합평가 또는 검토의견

라. 회사내 기초서류 관리기준과의 부합 여부

위 검토사항이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명(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

성명

(인)